

-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-1번지 일원 36,193㎡에 사업기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이며, 시설용량 1일 10,500M/T으로 총 사업비는 209억7,300만원으로써
- 금회에 지방채로 발행계획은 21억7,200만원으로 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율과 상환조건, 상환재원 등 내용을 보면 원금은 환경부의 예산으로 국고에서 부담하고 이자재원은 고성군의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어 지방채의 상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
- 총 사업비 209억7,300만원 중 예산의 부담비율을 보면 환특용자 70%, 지방비 30% 중 도비 15%, 군비 15%로 99년도 군비부담액은 4억6,545만원이며, 2000년 이후까지의 부담액은 22억4,175만원으로 5년거치 10년간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군비부담 예상추이 등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며
-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효과는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승인은 필요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지만 지방채는 긴급하고 필요시에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보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예산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
- 답 : 예산의 수지, 채무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은 가능할 뿐아니라 본건은 환특자금 및 양여금으로 상환함으로 문제없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